

## 대구대학교 · 근로복지공단 산학협력협약서

대구대학교와 근로복지공단(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근로자의 복지가 국가 발전의 근본이라는 공동인식 아래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정보 및 장비와 시설의 상호 교류와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이행)** ① 양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제반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분담한다.

**제3조(기본운영원칙)** 본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력교류에 있어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학술 정보의 교류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2. 연구기자재, 각종 시설물의 공동 활용 및 실험실습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
4.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교류에 관한 협력
5. 기술개발과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6. 근로복지공단 인력의 겸임 교원 위촉 및 활용
7.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 등

제5조(협력창구) ① 양 기관은 상대기관에 사업 및 기관 홍보를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기관을 현지 업무추진 및 홍보활동을 위한 협력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쌍방은 동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외홍보) 양 기관은 공동협력 내용 및 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 기관의 공동 명의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호협약)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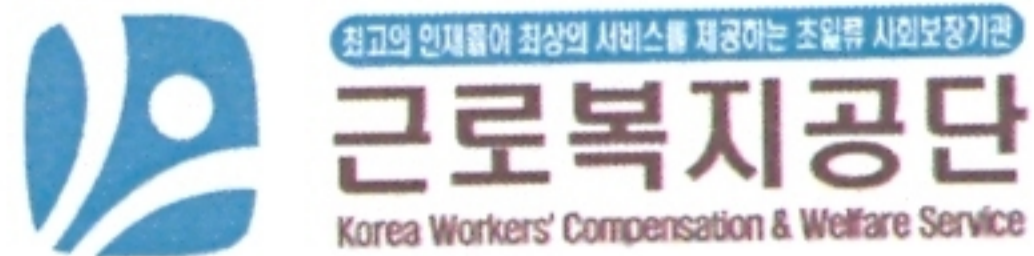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6. 5.



총 장 이 용 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이 사 장 김 원 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